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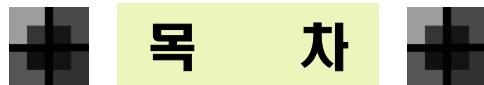
배포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2024. 7.

※ 동 매뉴얼은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1.12.28. 시행), 동법 시행령(2024.7.19. 시행)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2024.6.27.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 융 정 보 분 석 원
금 융 감 독 원



목 차

I. 개 요	1
II. 신고업무 절차	4
1. 신고서 접수	5
2. 신고 심사 의뢰	6
3. 신고 요건 심사	6
4. 심사결과 통보	7
5. 신고 수리 여부 통지·공고 등	8
III. 신고 요건 심사 세부내역	8
1. 신고서류 검토	8
2. 신고 불수리 사유 해당 여부 심사	11
IV. 변경 신고	14
V. 신고의 갱신	17
VI. 신고 유지 요건	18
 <붙임>	
1. 신고서 양식	19
2. 신고인·대표자·임원 확인서 양식	25
3. 사업추진계획서 양식	29
4.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 양식	32
5. ISMS 인증 관련 확인서 양식	35
6. 신고 요건 관련 법규	36

I 개요

- ◆ 동 매뉴얼은 「특정금융정보법」(2021.12.28. 시행) 및 동법 시행령(2024.7.19. 시행), 감독규정(2024.6.27.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

1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

- * ①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②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③ 가상자산 이전행위, ④ 보관·관리, ⑤ ①·② 행위의 중개·알선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에 대한 상세 설명은 “참고” 참조)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 >

- 가상자산 거래업자
-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

* 사업모델에 따라 영업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영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감독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업무규정

참 고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

◇ FATF 국제기준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요소는 ① 영업으로, ② 고객을 대신하여, ③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임

※ 본인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행위(P2P 등), 일회성 행위, 수수료 없이 플랫폼만 제공하는 행위 등은 제외

※ 참고: ①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②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③ 가상자산 이전행위, ④ 보관·관리, ⑤ ①·② 행위의 중개·알선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다만, 개별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의 예시 외에도 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음

① 가상자산 거래업자

-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통용됨
- 일반적으로 ⑤가상자산의 매도·매수(예: 현금과의 교환) 및 가상자산간 교환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 ③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 * (예) 단순히 이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이 있다는 사실이 게재만 되어 있는 게시판을 운영할 뿐, 당사자들간 거래는 개인별 지갑이나 또는 그 게시판 관련 회사의 지갑이 아닌 별도 지갑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②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수탁사업 등으로 통용됨
- 법상 ④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③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 다양한 사업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통용됨
- 법상 ③가상자산의 이전, ④가상자산의 보관·관리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
-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의 경우에도 ①가상자산 거래업자, ②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

* 가상자산 개인 암호키를 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여 보관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업무 개요

-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함(법 제7조)

* 9p. <표> '필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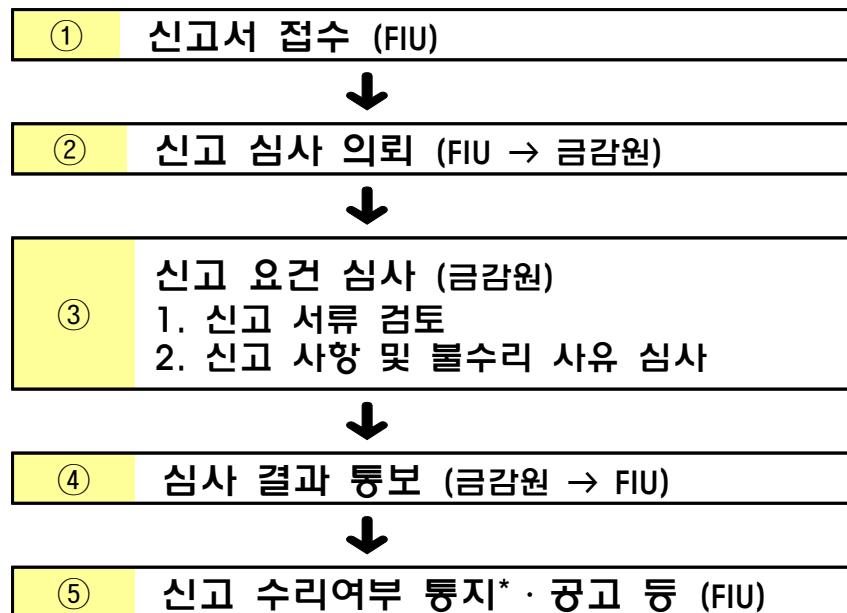
- **(주요 심사항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II

신고업무 절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흐름도>

* 신규·변경·갱신 신고 모두 동일하게 운영



*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할 예정.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1

신고서 접수 (FIU)

※ 사업자는 신고서류 준비 단계에서 FIU·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메일* 등을 통해 신고서류, 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 fiureport@korea.kr / (금융감독원) amlop@fss.or.kr

※ 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취득한 후 3개월 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에 임박하여 신고서류 제출시 신고서류 보완에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서류 등을 협의할 것을 권장

※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앞서 자신이 유통·취급하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24.6.10일 배포(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을 참고하여 판단

신고서 제출(법 제7조①)

-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준수(영 제10조의11, 감독규정 제27조)
- 신고인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

※ **【신고서 제출 방법】** 인터넷으로 공문을 제출하고 회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해 제출

* 수신처 및 문서 제목 : 금융정보분석원(가상자산검사과)을 지정하고 문서 제목은 가급적 '[회사명] 가상자산사업자(신규/변경/갱신 종택일) 신고서 제출'로 표기

** 제출 전 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철저히 확인

2

신고 심사 의뢰 [FIU→금감원]

- 신고 심사 업무는 금감원장에게 위탁(영 제10조의17)되어 있으므로, FIU는 접수된 신고서의 신고 요건 심사를 의뢰하기 위해 금감원에 공문 발송
 - 금감원은 심사의뢰 공문 접수 후 신고 요건 심사 업무 착수

3

신고 요건 심사 [금감원]

- (1단계)** 신고서류 검토
 - 법규상 필수 서류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 후 필요시 보완 요청
- (2단계)**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한국인터넷진흥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확인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발급한 금융회사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 * 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
 - **(사업자 요건)** 사업자(대표자·임원 포함)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은 유관기관 등의 신원조회 결과 및 신고인 제출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신고 수리 이후라도 확인서 및 신원조회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관련 법률 위반 사항 등이 제보 등의 방법으로 확인되는 경우 직권발소 등 사후 조치

※ 심사과정에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을 한 자(신고인, 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 포함)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인, 외국법인의 경우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 포함)에 의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신고 불수리 사항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조회·확인 중인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사실관계 등 조회·확인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될 수 있음(감독규정 제27조⑦)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별 해당여부 확인방법

대상	신고 불수리 요건	세부내용	확인 방법
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법 제7조③1.)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 제출서류 등 검토
사업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법 제7조③2.)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있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발급 받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은 자	· 제출서류 등 검토
사업자 (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 포함)	금융관련 법률 위반 (법 제7조③3.) * '21.3.25. 이후 최초로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 (법부칙제4조)	금융관련 법률 위반 결격요건 (법제7조③3. 및 영 제10조의12③)	· 확인서(불임2) · 제출서류 등 검토
사업자	신고·변경신고 말소 경력(법 제7조③4.)	신고·변경신고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확인서(불임2) · 사실조회 결과

* 불임2 신고인·대표자·임원 확인서를 우선 확인하고, 필요시 검찰청·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신원조회 결과로 해당 여부 확인

※ 심사항목별 세부 내역은 <III. 신고요건 심사 세부내역> 참조

4

심사 결과 통보 (금감원→FIU)

신고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FIU에 통보

5

신고 수리 여부 통지·공고 등 (FIU)

- FIU는 신고 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신고 수리 여부 결정
 -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FIU) 등에 공고
 - *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

III

신고 요건 심사 세부내역

[참고] 심사 세부내역 활용시 주의사항

- 본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인의 서류작성 등 준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된 포괄적인 기준으로서
 -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신고 이전에 금융감독원 심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1단계

신고서류 검토

- 구비서류 제출여부 확인
 - 신고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첨부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
 - 모든 첨부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및 기재내용이 누락 되어서는 안됨

<표 : 필수 기재 사항 및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필수 기재 항목 및 구비서류	확인 방법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 (붙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실명번호, 국적, 직위, 금융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조치내역 ○ 대주주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 가상자산 관련 법령(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 · 운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인력)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업무 관련 부서장 현황, 전문자격 등 - (물적설비) 가상자산 관련 법률 준수 위한 물적 설비 구비 현황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자금세탁방지 시스템(STR, KYC, WLF, RBA), 가상자산법 준수 체계 관련 시스템(이상거래상시감시시스템) 구비 현황 </div> - (내부통제체계)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관련 내규 마련 등 내부통제체계 현황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정보 ※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자의 국적 및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상 내용을 모두 기재했는지 확인 - 신고서(대리인) 서명·기명날인 확인
필수 기재 항목별 첨부서류		
신고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 사업자등록증(원본)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설립·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증 받은 정관인지 여부 - 해당 업종 영위 여부 등 - 사업장 소재지, 임원 명단 등 확인 - 신고결정 관련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공증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 - 신고인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여부

신고 매뉴얼

구분	필수 기재 항목 및 구비서류	확인 방법
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 현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임원·대주주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대표자·임원·대주주의 추가 사항 - 외국인 대표자·임원·대주주의 여권(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임원 현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 - 공증받은 주주명부인지 여부
사업추진계획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붙임3: 사업추진계획서) ○ 가상자산 취급 및 관리지갑주소 목록 (사업추진계획서 내 별첨 양식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항목을 모두 기재했는지 여부 등 - 서류 제출 여부 등
금융회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 평가 서류 ※ 금융회사등이 FIU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예) 사업자가 금융회사등에 위험평가 서류를 FIU에 제출토록 요청하여 금융회사등이 제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별 세부내용, 세부 산정내역을 포함한 항목별 배점 등 포함 여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제10조의12②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 받았는지 확인 (은행의 보고책임자 이상이 발급확인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완료후 조건부 발급 여부 확인 · 발급 확인서상 발급요건 심사 결과 총족 여부 확인 · AML/CFT 위험 평가 결과 ·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관리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 금융관계법률 위반 및 신고 말소 5년 미경과 여부 확인 ·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 필요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불필요 업종 여부 확인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구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기재한 서류 (붙임4: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항목을 모두 기재했는지 여부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사본) ※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확인받은 인증 범위에 관한 증빙도 함께 자료(붙임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발급여부, 유효기간, 인증범위 및 기한내 신고여부 등 확인

구분	필수 기재 항목 및 구비서류	확인 방법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인·대표자·임원의 확인서(붙임2) ※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외국인 대표자 외국인 임원의 추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2)의 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확인서 및 라. 외국인 대표자 및 임원 확인서 - 소재지 국가 및 대표자 임원의 국적 국가의 수사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죄 이력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이하, 범죄이력 관련 증빙서류) 	- 서류 제출 여부 등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대주주의 정의와 관련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준용(동법 시행령 제4조제2호는 제외)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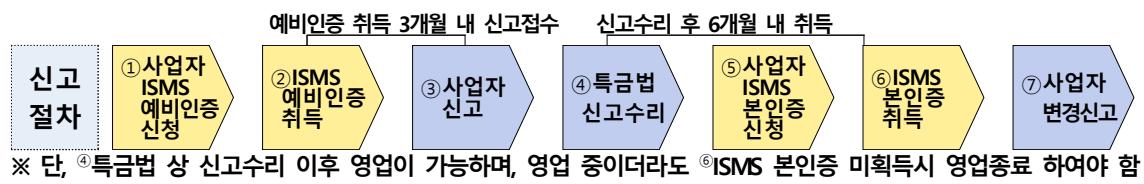
신고 불수리 사유 해당 여부 심사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 가상자산사업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ISMS 인증을 취득할 것(법 제7조③1.)
- ISMS 인증서, KISA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통해 인증 취득 내용, 유효기간* 등을 확인
 -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 만료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 ※ 변경신고 기한 도과 등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사안으로, 법 제1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필요
 -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인증서와 함께 ISMS 인증범위 확인서 양식(붙임5)의 신고인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금감원이 KISA에 사실조회를 의뢰하여 확인
 - KISA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ISMS 인증 사실 검증

<참고>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 취득 절차

-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야 함
 - (1단계) 시험환경을 구축한 후 ISMS 예비인증을 신청·취득(①,②)
 - (2단계) ISMS 예비인증 취득 3개월 이내에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③)
 - ※ ISMS 예비인증 취득 후 신고 기한에 임박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 보완 등에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를 거쳐 서류 준비할 것을 권장
 - (3단계) FIU 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ISMS 본인증을 취득(④,⑤)
 - (4단계) ISMS 본인증을 취득 후, FIU에 30일 이내 변경신고(⑥,⑦)



<②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적절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은행법상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을 것을(법 제7조③2.)

* 발급확인자는 보고책임자 이상, 담당자는 발급 은행의 부서장급 이상 기자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증명서를 통해 발급 내용, 유효 기간* 등을 확인

* 신고 유효기간 만료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해당 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계약체결일(예정) 30일 전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함

심사항목(법 제7조③2., 영 제10조의12②)

- 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불필요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확인
 -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여부 확인
- ②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았는지 확인
 - 신고 완료 후 조건부 발급 여부 확인

<③ 사업자(대표자 및 임원) 요건>

- 사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등기임원 포함)가 **국내외 금융관련 법률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법 제7조③3.)
 - 유관기관 등의 신원조회 결과 및 신고인 제출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 신고 수리 이후라도 신원조회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관련 법률 위반 사항 등이 제보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직권말소 등 사후 조치 가능

심사항목(법 제7조③3., 영 제10조의12③(지배구조법 제2조7.))

- 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 포함)

※ 심사항목 관련 법률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동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공인회계사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 ③ ① · 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④ 직권 말소 경력>

-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7조③4.)
 - 사실조회 결과 및 신고인 제출 확인서를 통해 확인

IV

변경 신고

◆ 변경신고 누락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업무처리에 유의할 필요(법 제17조②)

※ 영업종료 사업자 : 사업자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가상자산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3.11.21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참고)

- (대상)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7조②)
 - (시기) 변경사항 발생일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금융 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영 제10조의11③), 감독 규정 제27조⑤)
 - 다만, 업무범위 추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신규 발급 등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전에 신규 업무에 관한 ISMS 예비 인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FIU와 변경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 포함)한 자에 대해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까지 신고 불가하므로 신중할 필요

<표 : 변경신고 사항별 신고기한(예시)>

변경신고 사항	변경신고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 및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국적 및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선임·사임·퇴임일(예정)의 30일 전까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하여 선임·사임 퇴임한 날) * 부득이한 경우로 30일 전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사유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변경한 수행 행위 개시일(예정)의 30일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에 관한 정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체결일(예정)의 30일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대주주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 주요내용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명의개서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변경신고 대상은 이하 [참고]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 변경신고 범위 참고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참고]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 변경신고 범위

구분	변경 사항
변경신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변경 ② 자금세탁방지 시스템(STR, KYC, WLF, RBA) 및 가상자산법 준수 체계 관련 시스템(이상거래상시감시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시스템 운영 중단· 교체, 제3자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해당 제3자 변경시)
변경신고 예외 (경미한 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미한 조직·인력 변경 ② 전산설비의 경미한 변경 ③ 내규 제개정 사항 등

- (방법)**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 또는 변경 예정인 사항을 기재하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의사록 등(공증 필요), 변경사항이 반영된 등기부등본, 실명계정 계약 변경의 경우 계약서 등

<표 : 변경신고 사항별 구비서류(예시)>

변경신고 사항	증명서류
<공통>	
○ 상호	- 사업자등록증,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법인 등기부등본 등
○ 사업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 사업자등록증,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법인 등기부등본, 연락처 등을 게시한 홈페이지 화면 캡처 등
○ 국적 및 성명(대표자, 임원)	- (신고시) 대표자·임원 확인서, 경력사항 등 외국인 대표자·임원인 경우 범죄 이력 관련 증빙서류 - (선임후) 공증받은 이사회, 주주총회 의사록 - (수리된 경우 수리통보 이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전자우편 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 홈페이지 화면 캡처 등
○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소재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ISMS 인증 유효성 확인서(불임5) 등
○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 이사회 의사록, ISMS 인증 관련 확인서(불임5) 등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에 관한 정보	- (신고시) 계약내용 변경대비표,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 위험 평가한 서류 - (계약체결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및 계약서 등
○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주주명부(공증본)
○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 주요내용	-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변경: 이력서 -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변경된 위탁계약서, 시스템 캡처 화면 등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에 관한 정보	- ISMS 인증서, ISMS 인증 관련 확인서(불임5) 등
<외국가상자산사업자>	
○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 이사회 의사록, 국내 사무소 법인등기부등본, 소재지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화면 캡처 등
○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자의 국적 및 성명	- 이사회 의사록, 국내 사무소 법인등기부등본 등

* 등기부등본의 경우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선택하여 제출

** 해당 내용은 변경신고 증명서류에 대한 예시로 심사과정에서 심사담당자가 증명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V

신고의 갱신

- (대상)**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법 제7조⑥)
- (시기)** 신고 유효기간(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영 제10의15②)
 - * FIU는 필요한 경우 갱신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수 있음(법 제7조⑥, 영 제10의15③)
- (신고 업무 범위)** 사업자는 실제 영업으로 영위하는 수행행위를 업무로 갱신신고

* 유의사항 : 특정 수행행위가 업무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갱신신고 당시 해당 업무를 영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동 수행행위를 업무로 갱신 신고할 수 없음

< 신고 업무 범위 예시 >

- 사업자가 가상자산 매매·교환의 중개 행위를 영업으로 하고, 가상자산 매매·교환을 영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 가상자산 매매·교환의 중개 행위만 갱신신고 가능
- 사업자가 가상자산 보관·관리, 이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고, 그 외 업무를 영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 가상자산 보관·관리, 이전 행위만 갱신신고 가능

- (방법)** 갱신신고서 및 신고시 구비서류(9p, 구비서류 참고) 등을 첨부하여 FIU에 제출(영 제10조의15②)

-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관련 자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함

VI 신고 유지 요건

□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이후에도 다음의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법 제7조④, 영 제10조의13③)

- 신고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ISMS 인증 미획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획득, 신고인·대표자·임원의 범죄경력,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미경과

-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 예시) 사업자가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상장피를 받는 경우 등

불임 1 신고서 양식 [신규/변경/갱신]

1.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 · 갱신신고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신규 / <input type="checkbox"/> 변경 / <input type="checkbox"/> 갱신)				
① 신 고 인	명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본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②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현황				
임원 수: 명				
직위	성명	실명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국적	조치내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 또는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것				
③ 대주주 현황				
대주주 수: 명				
주주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④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항목			선택(○)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복수 선택 가능				

신고 매뉴얼

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처				
발급확인자*	은행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발급담당자*	은행명 : 부서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계약기간				
주요 계약조건 (인원수 등)	1. 2. 3.			

* 발급확인자는 은행의 보고책임자 이상으로 하고 발급담당자는 부서장급 이상으로 기재

⑥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작·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사항

주요 내용	
-------	--

⑦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구 分	내 용
발급처	
유효기간	
인증번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1 등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금융정보분석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인 관련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신고 매뉴얼

2. 대표자·임원 및 대주주 현황 관련
 - 가. 대표자·임원 및 대주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추진계획서 관련
 -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 나. 가상자산 취급 및 관리 지갑주소 목록 1부
4.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관련
 - 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 1부
 - 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계약서 1부
 - 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8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한 서류(평가항목별 세부내용, 세부 산정내역을 포함한 항목별 배점 등 포함)
※ 다목에 따른 서류는 위험평가를 실시한 금융회사등이 FIU에 직접 제출 가능
5.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구축 관련
 -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자료
6.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1부
7. 기타
 - 가. 신고인 · 대표자 · 임원 확인서

※ 변경신고시 신고서 작성 방법

1. 신고서 항목 중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만 작성
2. 첨부서류
 - 이사회의 의사록 등 변경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 변경신고 관련 증빙

※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할 예정임.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2.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 · 갱신신고서)

*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법 제2조제2호리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신규 / <input type="checkbox"/> 변경 / <input type="checkbox"/> 갱신)					
① 신 고 인	명칭(상호)		사업자식별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본점(외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국내 사업장	대표자 성명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등) :	국적 :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②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현황					
임원 수: 명					
직위	성명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국적	조치내역*	
신 고 사 항	③ 대주주 현황				
	대주주 수: 명				
	주주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④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항목				선택(○)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복수 선택 가능					

신고 매뉴얼

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처				
발급확인자*	은행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발급담당자*	은행명 : 부서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계약기간				
주요 계약조건 (인원수 등)	1. 2. 3.			

* 발급확인자는 은행의 보고책임자 이상으로 하고 발급담당자는 부서장급 이상으로 기재

⑥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작·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사항

주요 내용	
-------	--

⑦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구 分	내 용
발급처	
유효기간	
인증번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1 등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금융정보분석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인 관련

- 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1부
- 나. 사업자등록증 1부
- 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라.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마.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2. 대표자·임원 및 대주주 현황 관련

- 가. 대표자·임원 및 대주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추진계획서 관련

-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 나. 가상자산 취급 및 관리 지갑주소 목록 1부

4.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관련

- 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 1부
- 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계약서 1부

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8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한 서류(평가항목별 세부내용, 세부
산정내역을 포함한 항목별 배점 등 포함)

※ 다목에 따른 서류는 위험평가를 실시한 금융회사등이 FIU에 직접 제출 가능

5.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구축 관련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자료

6.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1부

7. 기타

- 가. 신고인·대표자·임원 확인서

※ 변경신고시 신고서 작성 방법

1. 신고서 항목 중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만 작성

2. 첨부서류

- 이사회의 의사록 등 변경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 변경신고 관련 증빙

※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할 예정임.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불임 2 신고인 · 대표자 · 임원 확인서 양식

가. 신고인 확인서

신고인 확인서

확인 사항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따라 별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동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공인회계사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선택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금융 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 ③ ① · 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10조의12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신 고 인 : (인)

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확인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확인서

확인 사항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속한 국가(이하, '해당 국가')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상당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국가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법상 지위가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국가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상당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해당 국가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상당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동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공인회계사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부자체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 ③ ① · 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신 고 인 : (인)

다.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확인서

대표자 및 임원 확인서(개인)

확인 사항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동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공인회계사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금융 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 ③ ① · 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10조의12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라. 외국인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확인서

외국인 대표자 및 임원 확인서(개인)

확인 사항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외국인이 속한 국가(이하, '해당 국가')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상당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여 별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국가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상당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해당 국가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상당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동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공인회계사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부자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금융 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 ③ ① · 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불임 3 사업추진계획서 양식

확인서

본인은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본 사업추진계획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및 검토한 결과,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본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X. XX. XX.

(주)XXXX 대표이사 xxx (인)

신고 매뉴얼

구 분	내 용
1. 회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설립일, 본사의 주소·전화번호·홈페이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정관상 사업의 내용 ◦ 계열회사 현황(계열회사 등, 주요 사업, 지분율 등) ◦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 사업, 최직근 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근거) ◦ 주주 현황(실지명의, 보유주식수, 지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경영진의 중요한 변동(최근 5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영위하는 사업내용(신고한 가상자산업 외 영위 중인 사업내용을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한 가상자산업 관련 사업계획 및 세부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문별 해당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영업행위, 서비스 URL 및 애플리케이션 - 사업부문별 사업방식 및 매출예상액, 수익원(수수료율)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서비스의 경쟁력 및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술 ◦ 가상자산 취급(예정) 및 지갑주소 목록(별첨 양식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의 관리를 위한 거래소 지갑 주소 목록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재무/손익현황 등(회계감사보고서/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 등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3년간 예상 재무/손익현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장전망, 점유율, 인건비 등 주요 비용 등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업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영업개시후 수입·지출 전망의 적정성을 표현할 것
2.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및 임원 이력서(보고책임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수(상근여부, 정규직 여부 포함)
3. 재무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재무/손익현황 등(회계감사보고서/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 등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3년간 예상 재무/손익현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장전망, 점유율, 인건비 등 주요 비용 등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업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영업개시후 수입·지출 전망의 적정성을 표현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및 임원 이력서(보고책임자 포함)
4. 임직원 현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수(상근여부, 정규직 여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재무/손익현황 등(회계감사보고서/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 등 첨부)

별 첨 가상자산 취급 및 관리 지갑주소 목록 양식

1. 전체 가상자산 현황(신고일 기준)

가. 총 종류수(나. + 다.) : 개

2. 가상자산 내역(신고일 기준)

주1) 발행기관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2) 가상자산의 용도에 따라 해당하는 칸에 ○ 표기(복수 표기 가능)

3)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 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

4)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 관리를 위한 거래소의 지갑주소 목록

불임 4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 양식

확인서

본인은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본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및 검토한 결과,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본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를 제출합니다.

202X. XX. XX.

(주)XXXX 대표이사 xxx (인)

구분	내용	관련법령
1. 자금세탁 방지체계 관련	◦ 자금세탁방지 조직(부서) 현황(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이력사항, 임직원별 주요업무* 포함) * 겸직이 있는 경우 추가 표기	특금법 §5
	◦ 자금세탁방지 시스템(STR, KYC, WLF, RBA) 구축 여부[구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시스템 캡처화면, 제3자에게 위탁하여 구축시 위탁계약서등) 포함]	특금법 §5
	◦ 의심거래보고 관련 : 의심거래 추출기준, 분석방법 및 의심거래 보고 절차 등	특금법 §4
	◦ 트래블룰 이행계획 : 적용대상, 이행방법(관련 솔루션 가입(예정)시 가입(예정)내역 첨부), 개인지갑 및 해외거래소 등에 대한 출금 정책 등	특금법 §6③
	◦ 이용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관련	특금법 §5의2
	- 고객(이용자) 신원확인, 실제소유자 확인 방법	
	- 고위험고객(정치적 주요인물, FATF지정 위험국가의 고객,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방법 및 지속적 모니터링 방법 등	
	- 고객(이용자)의 신원확인 거부 등의 경우 거래거절 등 처리방법	
	◦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보고책임자의 역할	특금법 §5 업무규정 §4~6
	◦ 내부 교육 및 연수 실시계획	특금법 §5 업무규정 §7~9
	◦ 직원 알기제도 절차 및 운영계획	특금법 §5 업무규정 §10~11
	◦ 독립적 감사체계 운영계획	특금법 §5 업무규정 §12~16
	◦ 법령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관련 자료 보존계획	특금법 §5의4 업무규정 §84~87
	◦ 신규 가상자산 취급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위한 절차	특금법 §5 업무규정 §17
	◦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현황 등에 대한 위험평가 기준, 위험평가 내역	특금법 §5 업무규정 §19
	◦ 법 제8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 마련 여부	특금법 §8 시행령 §10의20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제한	
	- 임직원 등의 자체 플랫폼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제한	
	- 다크코인 인지 방법 및 취급제한	
	-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거래중개(오더북 공유) 제한	
	◦ 위 자금세탁방지 체계 이행을 위한 내규 및 업무위수탁 계약서(업무위수탁시)	-

신고 매뉴얼

2. 가상자산법 준수체계 관련	◦ 신고한 사업상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예치금 관리계획	가상자산법 §6
	◦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 및 보호 관련 내부통제체계	
	- 이용자 명부 작성·비치 계획	
	- 신고인과 이용자의 가상자산 분리·보관 계획	가상자산법 §7
	-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계획	
	-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의 외부기관에 위탁 보관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관한 정보	
	◦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계획	가상자산법 §8
	◦ 가상자산거래기록 생성·보존 및 파기 관련 내부 절차	가상자산법 §9
	◦ 임의적 입·출금 차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 입·출금 차단 사유, 통지절차 등을 포함한 내규, 시스템 등	가상자산법 §11
	- 입·출금 차단 후 보고 절차 이행계획	
	◦ 이용자간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상거래 감시를 위한 시스템 마련 여부	가상자산법 §12
	◦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식별·취급금지 등 거래 제한기준	가상자산법 §10⑤
	-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처리기준	
	◦ 위 가상자산법 체계 이행을 위한 내규 및 업무위탁 계약서(업무위탁시)	-
3. 기타 이용자 보호방안 관련	◦ 가상자산 취급 관련 위험고지* 방법 <small>* 화폐가 아니며, 원금손실 가능성 및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small>	-
	◦ 제공 서비스 관련 각종 수수료 및 거래관련 세금 등의 고지 방안	-
	◦ 고객피해보상절차 및 방법(민원, 분쟁처리절차)	-
	◦ 영업종료 절차 및 이용자 보호 방법(공지절차, 고객자산 반환 절차 등 포함)	-

※ 작성요령

- 1) 각 내용에 대한 회사의 주요 정책과 관련 내규를 함께 서술하고 내규도 별도 제출
- 2) 관련 법령은 대표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작성시 특금법·가상자산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신고인의 의무사항을 누락 없이 기술

불임 5 ISMS 인증 관련 확인서 양식

ISMS 인증범위 확인서

1.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현황 (신고인 기재)

가. 업체(기관)명 :

나. 인증번호 :

다. 인증범위 :

라. 유효기간 :

마. 유지여부 :

2.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범위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명칭 ¹⁾ (신고인 기재)		ISMS 인증범위 확인 ²⁾ (KISA 기재)
서비스명	서비스 설명 및 URL	

주1) 업무범위 관련 서비스 URL 및 애플리케이션 명칭을 작성

2) 신고인이 기재한 서비스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ISMS 인증심사시 인증범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기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요구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관련하여 (주)OO사가 작성한 서비스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이 ISMS 인증범위에 포함됨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 ××. ××

불임 6 신고요건 관련 법규

1. 신고사항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2. 국적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국적 및 성명을 말한다)
3.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4.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④ 영 제10조의11제2항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행위 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2.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3.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 나.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자의 국적 및 성명
4. 대주주에 관한 사항(대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
5.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2. 불수리 요건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p>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p>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p>	<p>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 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 <p>제10조의18(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①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할 것 법 제8조 및 이 영 제10조의20제1호에 따라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금융회사등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 하려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 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갱신신고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 금융관련 법률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p>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화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p>	<p>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③ 법 제7조제3항 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화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률(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라. 직권말소 경력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p>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